



제418회국회(정기회)
제 2 차 교 육 위 원 회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김형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379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총괄적검토	3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
(2) 제정안의 구성	3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4
2. 의과대학 설치 규정 및 설치·입학정원 관련 타법 우선 적용	5
3. 설치위원회	7
4. 입학정원 범위 설정	9
5.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10
(1) 예산지원의 특례	10
(2) 지원기금의 조성	13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14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15
6. 지역인재전형	17
7. 지역의료과정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19
※ 참고자료	23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23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25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26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2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형동 의원 등 24인
2. 발의연월일 : 2024. 7. 30.
3. 회부연월일 : 2024. 7.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상북도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인 1.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평균인 2.04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며,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6개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고, 의료 이용 친화도도 전국에서 가장 낮음. 특히, 고령화 등으로 고령 및 중증환자 수는 많으나 상급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아 중증환자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이처럼 경상북도는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은 단 1곳으로 의료 인력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의료 인력 확충 등 의료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료취약지역인 경상북도에 대한 의료인프라 및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캠퍼스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의과대학의 정원은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운영 등을 위하여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토지 등의 수용·사용,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지역적·사회적 특성 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함(안 제13조).
- 마.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계약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도록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규정함(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1)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정원을 100명 이상 150명 이하로 하며, 경상북도 내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예산지원의 특례, 지원기금의 조성,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며,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한 의과대학 학생이 의사 면허 취득 후 일정기간 경북지역의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복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를 통해 경상북도에 의료인 양성 인프라를 확충하는 동시에 경상북도 시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제정안의 구성

제정안은 본칙 14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됨.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본칙(14개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4조(입학정원)

제2조(설치)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설치위원회)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의 특례)	제10조(토지 등의 수용·사용)
제8조(지원기금의 조성)	제11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제9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제3장 지역의료 강화	
제12조(지역인재전형)	제14조(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제13조(지역의료과정)	
☐ 부칙(2개 조문)	
제1조(시행일)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3) 지역 의과대학 법안 발의 현황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은 총 8건으로 다음과 같음.

< 21대국회 지역 의과대학 특별법안 >

의안번호	법안명	대표발의의원
2102624	국립창원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강기운 의원
2115571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김원이 의원
2116729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 의원
2117015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성일종 의원
2118300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김희재 의원
2123732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안	최형두 의원
2124533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영희 의원
2125447	한경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최혜영 의원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제정안 외에도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¹⁾,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²⁾,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³⁾,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⁴⁾이 상정되어 있음.

2. 의과대학 설치 규정 및 설치·입학정원 관련 타법 우선 적용 (안 제2조 및 제4조)

제정안은 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 산정 등에 대해 규정한 다른 법률에 불구하고, 경상북도 내 설립되어 있는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제2조(설치) ① 경상북도 내 설립되어 있는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다. 이 경우 설치된 의과대학(이하 “도내 국립의과대학”이라 한다)은 지역 인구수 및 균형발전, 의료서비스 상황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북부와 남부 권역에 교사(校舍), 부속병원, 연구시설 등의 시설이 위치한 부지(이하 “캠퍼스”라 한다)를 둘 수 있고, 「고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권역별 행정구역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치와 입학정원의 산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입학자격·수업연한·교육과정·학위 수여 및 그 밖에 도내 국립의과대학

1) 의안번호 제2200279호,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2) 의안번호 제2200474호, 김문수의원 대표발의

3) 의안번호 제2201062호, 김교홍의원 대표발의

4) 의안번호 제2202120호,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법에 따를 때, 대학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나⁵⁾, 의과대학의 경우 「의료법」⁶⁾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수준으로 정원제한을 받는데, 2025학년도 기준 의과대학의 정원은 5,058명이고, 정원내 모집인원은 4,565명임.

법 제정이 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따라 의과대학을 설립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국립대학교 의과대학과는 달리 특별법으로 도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게 되고, 도내 국립의과대학에 특별히 적용되는 정원과 의무복무 등의 규정을 두게 됨.

5)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기본시설: 교육·연구활동에 적합하게 갖추어 것
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추어 것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어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6) 「의료법」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의료인의 확보와 적절한 공급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한다.

교육부는 특정 대학의 의과대학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법의 제정은 특별법의 취지나 대학 간 형평에 맞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지역, 공공, 필수분야 의사부족과 인력 확충을 위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기존 대학 중심으로 확대했으며,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의료계와의 협의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으로 특정대학 및 입학정원 등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기존 법률 및 규정에서 의대 설립 요건·절차를 이미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의대 설립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법 체계상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 설치위원회(안 제3조)

제정안은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계획, 대학선정기준 마련, 정원, 교육과정, 부속병원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설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제3조(설치위원회) ① 의과대학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설치위원회(이하 “설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내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2. 의과대학을 설치할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의 선정기준 마련 및 선

정, 정원에 관한 사항

3.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캠퍼스 조성 및 그 명칭 등에 관한 사항

4.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공동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부속병원 설치 및 그 위치에 관한 사항

6.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부속병원과 기존 도내 의료기관간 연계·협력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8. 그 밖에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설치위원회는 위원장인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한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외 설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감독 및 해촉, 기타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위원회를 두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별도 의과대학이 설치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설치위원회를 두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둘 경우 설치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설치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바, 이를 재량규정으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 복수의 유사 위원회와의 연계·통합 등을 통해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⁷⁾을 고려하여 별도 위원회 신설보다는,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근거한 교육부 소속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⁸⁾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산하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4. 입학정원 범위 설정(안 제4조)

제정안은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정원을 150명 이내로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제4조(입학정원) 교육부장관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총 입학정원을 15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정안과 같이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범으로 규정하는 경우 경상북도 지역에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효과를 기대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8)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설립주체가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었는지의 확인
2. 제2조의4에 따른 대학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대학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국내의 다른 위치에서 운영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인가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2024년 3월 20일, 교육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이미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의과대학에 정원이 배정되었음.⁹⁾ 따라서 별도의 법률을 통해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입학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의과대학의 정원을 더 많이 증가시킬 것으로 보임.

5. 의과대학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등(안 제7조부터 제11조)

(1) 예산지원의 특례(안 제7조)

제정안은 국가가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제7조(예산지원의 특례) ① 국가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설·설비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기간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예산 지원 및 내용,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에 대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지원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¹⁰⁾, 제정안은 지원대상을 특정하여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음.

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강의동, 부속병원 등 건물

9) 참고자료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10) 「고등교육법」 제7조(교육재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필요하며,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은 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¹¹⁾, 설립비용 외에도 운영비·연구비 등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임.

이러한 지원규정은 상당한 재정 소요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다른 의과대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의과대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교육부는 의과대학의 신·증설 가능성, 설립 주체(국립, 사립) 및 설치 후보 지역·대학은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정원이 통보된 이후 검토 가능한 사항이며, 특정지역 국립의과대학 설치를 전제로 하는 법률조항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특정 학교·지자체에 한정하는 재정지원(시설 및 설비 조성, 운영, 학비 지원 등)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수용 곤란하며, 국립대학(의대 포함)에 대해서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국립대학 시설확충 사업’을 통해 시설확충비, 보수비 등을 지원 중이며,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금 등 지원 중이라는 입장임.

보건복지부는 의대 신설의 경우 대상 지역뿐 아니라 추가로 의과대

11)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약학과 또는 제약학과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의학계”라 한다)가 설치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 별로 설립한다.

② 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分院(分院)을 둘 수 있다.

학 및 부속병원 건립 재원, 교원 확보 등에 관한 기재부, 교육부 등 유관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임.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른 2025년부터 2034년까지 발생하는 재정소요는 다음과 같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건립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실시되고, 2029년부터 신입생이 입학하고 2034년에 의과대학 정원(900명)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을 전제할 때,

설치위원회 운영에 2025년부터 2034년까지 5,460만원, 의과대학 설립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410억원, 부속병원 설립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851억 6,800만원, 의과대학 운영에 2028년부터 2034년까지 1,113억 1,600만원이 소요되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총비용은 3,375억 3,900만원으로 추계됨.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34년 >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합 계
설치위원회	31.2	2.6	2.6	2.6	2.6	2.6	2.6	2.6	2.6	2.6	54.6
의과대학 설립	-	5,608	66,537	68,855	-	-	-	-	-	-	141,000
부속병원 설립	-	2,293	27,562	55,314	-	-	-	-	-	-	85,168
의과대학 운영	-	-	-	-	12,471	14,988	17,721	18,931	21,901	25,303	111,316
계	31.2	7,903	94,101	124,171	12,474	14,991	17,724	18,934	21,904	25,306	337,539

- 주: 1) 설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총 13명, 수당 단가는 20만원으로 가정하고 회의 횟수는 25년 월 1회, 26년 이후 연 1회로 가정
 2) 실제 공사 기간과 신입생 입학 연도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발생 연도는 변경될 수 있음
 3) 건물 건립 비용은 토지매입비와 공사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치비, 녹색건축물인증 비용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해당 금액을 포함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4) 부속병원 건립 비용은 국고지원을 25%만을 반영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결과보다 증가할 수 있음
 5) 의과대학 운영 비용의 경우 실제 교직원 채용형태와 채용규모 등에 따라 결과값이 변동될 수 있음
 6) 의과대학 기숙사가 건립·운영될 경우 재정소요가 증가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지원기금의 조성(안 제8조)

제정안은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국립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8조(지원기금의 조성) ① 경상북도 또는 경상북도 내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금의 조성은 기금의 탄력적 운용을 통해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지원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그러나 제정안은 지원기금에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람에 대한 세액 공제규정을 두고 있을 뿐, 조성된 기금의 구체적 용도 및 운용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이나, 위임규정이 부재함. 따라서 기금 조성을 규정한 타 법의 체계를 참고했을 때, 용도에 대한 규정을 하거나 혹은 용도에 대한 위임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안 제9조)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도내 국립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게 함.

제9조(국·공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국가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도내 국립의과대학에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도내 국립의과대학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양여는 소유권을 조건 없이 상대방에게 이전해주는 것으로 자치단체의 일방적인 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예외적인 경우¹²⁾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 공유재산은 유상매각이 원칙인 점,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¹³⁾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 양여 특례를 두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¹⁴⁾에 따라 국가에게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가 가능하므로, 본 제정안에 별도의 특례를 두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4)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안 제9조)

제정안은 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1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0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양여할 수 있다.

1. 해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구역에 있는 시·군 또는 자치구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또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일반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 그 용도에 대신하여 다른 시설을 마련하여 제공한 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양여하는 경우
4. 도시계획사업 집행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그 도시계획사업시행지구에 있는 토지를 양여하는 경우
5. 그 밖에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보유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3)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11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의과대학이 설치된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이하 “도내 국립대학교”라 한다)의 장은 의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는 경상북도 내 국립대학교가 공공기관인 바,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국립대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소관인만큼, 승인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유사한 사례인 서울대학교¹⁵⁾ 및 인천대학교¹⁶⁾의 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에서도 그 승인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15)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대학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면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장기차입 및 학교채 발행)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는 대학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장기차입을 하거나 학교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장기차입 또는 학교채 발행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6. 지역인재전형(안 제12조)

제정안은 도내 국립의과대학의 장이 의과대학 입학생을 선발할 때 일정한 비율을 지역인재전형으로 입학시키도록 하고 있음.

제12조(지역인재전형) ①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과대학 입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경상북도에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 재학기간 중에 경상북도에 계속 거주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정안은 지역인재전형의 응시자격을 도내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역의사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보임.

한편, 이미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유사한 제도로써 지역인재전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¹⁷⁾. 두 제도는 그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②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군·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취지는 유사하나,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중 일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상이한 측면이 있음. 반대로 제정안의 지역인재전형을 그 요건을 경상북도 소재 중고등학교로 한정하고, 학생들은 졸업 이후 의무복무를 하여야 함.

때문에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지역인재전형의 일부로서 시행될 것으로 보이나, 유사한 제도의 중복으로 인한 혼선 및 두 전형이 각각 실시됨으로 인한 지역인재 과다채용으로 지역 외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지역인재전형을 지방대육성법상 지역인재전형의 일부로서 시행되는 것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임.¹⁸⁾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할 것

-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저소득층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18) 제7조(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응시자격)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

7. 지역의료과정 및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안 제13조, 제14조)

제정안은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이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동 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복무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제13조(지역의료과정) ①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은 경상북도 내 전문병원·응급의료기관 등 의료제공체계 및 지리적 특성 등 지역적·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의료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료과정의 입학 요건, 교육 내용, 지역의료 수련, 전공의 배정, 학생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지역의료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4조(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① 도내 국립대학교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내 국립의과대학 학생 간 계약에 따라 도내 국립의과대학에서 제13조에 따른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상북도 내 지역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업무에 일정 기간 동안 복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정안의 경우 다른 지역공공의대 법안과 달리, 지역의료과정을 이수하고 의사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의무복무규정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난 2024년 2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보임.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관련 자료 >

- ③ (지역필수의사제)^{특위}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 지역필수의사제 검토 예시 >

- ▶ (지역의료리더 육성제) 대학-지자체-학생 3자 계약 下 '지역의료리더 육성 프로그램' 선택 시 장학금·수련비용 지원 + 교수 채용 할당 + 定住 지원 → 일정 기간 지역 근무
- ▶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 충분한 수입 + 定住 여건(교육, 주거 등 지자체 지원) 보장 등을 조건으로 지역 필수의료기관 장기근속 계약
 - ➡ 지자체·대학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 노력에 따른 의대 증원 분 배정, 지역의료 재정지원, 시범사업 등 연계

< 참고: 지역의사 관련 WHO 권고 >

- ▶ WHO, 「지방 의료인력 분포 개선 정책 권고('10)」
지역의사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 출신 선발, ▲지역의료 교육 강화, ▲경력개발, ▲정주 환경 지원정책 등 쉰 주기적 정책 추진 권고

제정안은 의무복무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참고로 군인, 경찰 등 다른 직역의 의무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음.

< 의무복무기간 현황 >

	사관학교			경찰대학	한국 농수산대학
	육/해/공군	육군3	국군간호		
근거법률	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 사관학교 설치법	국군간호 사관학교 설치법	경찰대학 설치법	한국 농수산대학 설치법
설치목적	군 장교 양성	육군 장교 양성	군 간호장교 양성	경찰간부 양성	농어업인력 양성
소관부처	국방부	국방부	국방부	경찰청	농림축산 식품부
대학 유형	대학	대학	대학	대학	전문대학
수업연한	4년	2년	4년	4년	3년

학위	학사학위	학사학위	간호 학사학위	학사학위 (법학/행정학)	전문 학사학위
졸업자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졸업자 소위 임용	간호사시험 합격자 소위 임용	졸업자 경위 임용	임용 × (의무복무)
의무복무 분야	각군 장교	육군 장교	국군 간호장교	경찰 간부	농어업분야
의무복무 기간	10년 (5년차 전역기회)	6년	6년	6년	지원기간의 2배 (최대 6년)
	군인사법 §6②③ 및 §7①			법 §10①	법 §9①
병역기간 산입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현역장교 복무)	○ (의무경찰대 대원)	×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산입×)
	병역법 §5①			령 §23등 ¹⁹⁾	령 §12② ²⁰⁾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의한 의무복무는 경상북도에 안정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 의과대학의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서의 의무복무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19)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조(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법 제10조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은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3(의무경찰의 임용 및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경찰대 복무) ②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의무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한다.

20)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제12조(학비 지원과 조건 이행)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종사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과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문 의 처
02)6788-5188

※ 참고자료

1. 의과대학 설립 관련 규정

□ 고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학교설립 등)

☞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함

제32조(학생의 정원) 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학생의 정원) ① 법 제32조에 따른 대학의 학생정원은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로 학칙으로 정하되**,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수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칙으로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력의 양성과 관련되는 모집단위별 정원
가. 「의료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5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교사) 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부속시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학교현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추어 것. 다만, 의학·치의학·한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의학 관련 학과·학부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병원의 지정기준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수련병원등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기준) ① 인턴 수련병원등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규모, 시설, 장비 및 진료실적 등을 갖추는 것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가. 병상 규모 : 허가 병상 수 100병상 이상

나. 연간 진료실적 : 퇴원환자 2,000명 이상

다. 병상 이용률 : 실제 운영 병상 수를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 이용

라. 시설 및 기구 : 간호과, 영양과, 약국, 의무기록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중앙공급실, 인턴당직시설, 분만실, 회복실 및 강의실(또는 회의실)을 갖추는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4개 이상의 전문과목별로 별도의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진료과별로 1명 이상의 전속(專屬) 전문의와 1년 이상의 진료실적이 있어야 한다.

<참고>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이상 8개과)

3.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았을 것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제5조(설립) ① 대학병원은 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별로 설립한다.

제6조(대학병원의 명칭) 대학병원의 명칭은 관련대학명에 "병원"을 붙여 사용한다.

2. 4대 교육 여건 산정 기준(대학설립·운영규정)

□ 교사(교사기본시설·지원시설·연구시설) 기준면적 [제4조제3항 관련]

계 열 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학생 1인당 기준면적(m ²)	12	17	20	19	20

※ 전문대학은 교사기준면적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교지 기준면적 [제5조제1항 관련]

학생 정원 (편제정원)	400명 이하	400명 초과~1,000명 미만	1,000명 이상
면적(m ²)	교사건축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 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 교원 산출기준 [제6조제1항 관련]

계열별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교원1인당 학생수(명)	25	20	20	20	8

□ 수익용 기본재산 [제7조제1항 관련]

- 대학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금액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대학에 국가가 그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8%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대학 제외) 300억원
2. 전문대학 200억원
3. 대학원 100억원

3.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 수 및 입학 정원

시도명	인구 천명당 의사수(2021)	학교수	정원	학교명(의예과 기준)
계	2.13(평균) (OECD 평균 3.6명)	40	3,058	
서울	3.37	8	826	서울대(135), 경희대(110), 고려대(106), 연세대(110) 중앙대(86), 이화여대(76), 한양대(110), 가톨릭대(93)
부산	2.45	4	343	부산대(125), 고신대(76), 인제대(93), 동아대(49)
대구	2.55	4	302	경북대(110), 계명대(76), 영남대(76), 대구가톨릭대(40)
인천	1.77	2	89	인하대(49), 가천대(40)
광주	2.54	2	250	전남대(125), 조선대(125)
대전	2.56	2	150	충남대(110), 을지의대(40)
울산	1.60	1	40	울산대(40)
경기	1.68	3	120	아주대(40), CHA의과대*(40), 성균관대(40)
강원	1.81	4	267	강원대(49), 한림대(76), 가톨릭관동대(49), 연세대원주(93)
충북	1.57	2	89	충북대(49), 건국대충주*(40)
충남	1.54	3	182	단국대천안(40), 순천향대(93), 건양대(49)
전북	2.06	2	235	전북대(142), 원광대(93)
전남	1.75	-	-	-
경북	1.38	1	49	동국대경주(49)
경남	1.71	1	76	경상대(76)
제주	1.77	1	40	제주대(40)
세종	1.23	-	-	-

4.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및 모집인원 현황

지역	대학명	2024학년도 정원	배정	2025학년도		
				정원 (A)	모집인원 (정원내) (B)	차이 (B-A)
수도권	서울	서울대		135	134	△1*
		경희대		110	110	0
		연세대		110	110	0
		한양대		110	110	0
		고려대		106	106	0
		가톨릭대		93	93	0
		중앙대		86	85	△1*
		이화여대		76	76	0
	서울	826	0	826	824	△2
	경기	성균관대	80	120	110	△10
		아주대	80	120	110	△10
		차의과대	40	80	80	0
	인천	인하대	71	120	120	0
		가천대	90	130	130	0
	경기·인천	209	361	570	550	△20
	수도권 소계	1,035	361	1,396	1,374	△22
비수도권	강원	강원대	83	132	91	△41
		연세대 분교	7	100	100	0
		한림대	24	100	100	0
		가톨릭관동대	51	100	100	0
	경북	동국대 분교	71	120	120	0
	대구	경북대	90	200	155	△45
		계명대	44	120	120	0
		영남대	44	120	100	△20
		대구가톨릭대	40	80	80	0
	경남	경상국립대	124	200	138	△62
	부산	부산대	75	200	163	△37
		인제대	7	100	100	0
		고신대	24	100	100	0
		동아대	51	100	100	0
	울산	울산대	80	120	110	△10
	전북	전북대	58	200	171	△29
		원광대	57	150	150	0
	광주	전남대	75	200	163	△37
		조선대	25	150	150	0
	제주	제주대	60	100	70	△30
	충남	순천향대	57	150	150	0
		단국대 (천안)	80	120	80	△40
	충북	충북대	151	200	125	△75
		건국대 분교	60	100	100	0
	대전	충남대	90	200	155	△45
		건양대	51	100	100	0
		을지대	60	100	100	0
	비수도권 소계	2,023	1,639	3,662	3,191	△471
	합계	3,058	2,000	5,058	4,565	△493